

LH 공사시방서

Korea Land & Housing Corporation Construc

LHCS 10 10 20

# 자재관리 일반



##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

구분	주요내용	개정(년.월)	비고
LHCS 10 10 20	•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	제정 (2020.12.0)	
LHCS 10 10 20	•2018~2020 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	개정 (2020.12.0)	
LHCS 10 10 20	•친환경자재 품질기준 개선(주택기술처-2071)	개정 (2021.08.0)	
LHCS 10 10 20	•단순 오류 정정 및 관련 기준 추가	개정 (2022.10.0)	

---

## 목 차

---

1. 일반사항-----	1
1.1 적용 범위-----	1
1.2 참고 기준-----	1
1.3 용어의 정의-----	1
1.4 제출물-----	1
1.5 자재의 선정-----	1
1.6 운반 및 취급-----	3
1.7 보관 및 보호-----	3
1.8 레미콘.아스콘 불량자재 처리-----	3
2. 자재-----	4
3. 시공-----	4

## 1. 일반사항

### 1.1 적용 범위

(1)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(이하 LH 라 한다)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, 공사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재의 선정, 운반, 취급, 보관 및 보호 등 자재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.

### 1.2 참고 기준

#### 1.2.1 관련 법규

- 건강친화형 주택건설 기준
- 실내공기질 관리법
-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
-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(국토교통부고시)

#### 1.2.2 관련 기준

- KCS 14 20 20 자재관리
-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
- LHCS 10 10 20 05 사급자재 관리
- LHCS 10 10 20 10 지급자재 관리
- LHCS 10 40 00 시험
- 자재관리지침(LH)

### 1.3 용어의 정의

- (1) 대체자재 : 수급인의 잘못이 아닌(자재의 생산중단, 구매 등의 문제) 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이 공사수행을 위하여 LH 에 자재의 대체를 요청할 수 있는 자재
- (2) 복수적용자재 : 설계도서 작성시 동일 또는 유사한 성능.기능이 검증된 복수의 자재 (공법)로 현장에서 수급인이 자유롭게 선택 적용할 수 있는 자재
- (3) 친환경 건축자재 :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, 실내공기질관리법(제 11 조) 및 같은 법 시행규칙(제 10 조) 및 녹색건축 인증기준 과 관련하여 쾌적한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는 건축자재

### 1.4 제출물

(1) 제출물 일반사항은 LHCS 10 10 10 05 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.

## LHCS 10 10 20 자재관리일반

**1.4.1 착공 전 제출물(SD-1)**

- (1) 대체자재 사용 신청서
- (2) 복수적용자재(공법) 사용 신청서

**1.5 자재의 선정**

**1.5.1 자재의 선정 일반사항**

- (1) 수급인이 제공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해당 시방 또는 계약도서에 명시된 품질기준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한다.
- (2) 수급인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구매하는 사급자재의 선정에 대하여는 LHCS 10 10 20 05(1.5)를 따른다.

**1.5.2 대체자재 적용**

- (1) 수급인은 해당 시방 또는 계약서에서 대체자재를 명시한 자재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공사감독자(건설사업관리자)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(2) 수급인은 대체자재 신청시 해당 시방 또는 계약서에 일치한다는 다음 사항의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① 설계서에 반영된 자재의 품질수준을 만족 또는 능가한다고 판단하는 근거
  - ② 설계서에 반영된 자재의 보증과 같은 조건의 대체자재 보증제공
  - ③ 수급인이 자신의 부담으로 완성될 공사에 요구되는 다른 공사에 대한 변경과 비용 부담
  - ④ 대체자재 사용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나 공기연장에 대한 청구포기
  - ⑤ 관계 기관의 재승인에 관련되는 검토 또는 재설계 업무에 대하여 LH 또는 공사감독자(건설사업관리자)에게 하는 사후 정산
- (3) 대체 자재가 별도의 서면 승인신청 제출없이 시공상세도면 또는 제품자료 제출시에 명시되었거나 묵시되었을 때, 또는 대체자재의 수용으로 계약서에 수정이 필요할 때는 자재 대체는 수락할 수 없다.
- (4) 제출시기 및 부수
  - ① 제출시기 : 사유발생시
  - ② 제출부수 : 2 부

**1.5.3 복수적용자재(공법) 적용**

- (1) 수급인은 해당 시방 또는 계약도서에서 복수적용자재(공법)를 명시한 자재에 대하여 적용할

수 있으며, 복수적용자재(공법) 사용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(2) 제출시기 및 부수

① 제출시기

가.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 일 전까지

나. 시공계획서를 제출하는 자재인 경우 시공계획서 제출시

※ 시험.검사가 필요시 소요기간 추가

② 제출부수 : 2 부

**1.5.4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(주택)**

(1) 수급인은 LHCS 10 40 00(부록 4)에 명시된 품질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.

(2) 친환경 건축자재를 적용하여야 하는 대상 범위는 대피공간 및 비확장발코니를 제외한 실내공간 및 노유자 시설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써 LHCS 10 40 00(부록 4)에 명시된 자재 항목에 따른다.

(3) 친환경 건축자재의 품질시험 및 검사는 LHCS 10 40 00(1.5.1)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.

(4)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등에 대한 사항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따라 LHCS 10 10 10 05(1.14.4)을 제출하여야 한다.

**1.6 운반 및 취급**

**1.6.1 운반 및 취급 일반사항**

(1) 수급인은 자재 운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충분히 습득한 후 운반 및 취급을 해야 한다.

(2) 수급인은 자재 운반 및 취급 과정에서 변질, 손상, 오염, 뒤틀림,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.

(3) 수급인은 자재반입시 품질기준 요건 적합성과 반입수량의 일치여부, 자재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.

**1.7 보관 및 보호**

**1.7.1 보관 및 보호 일반사항**

(1)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보관 및 보호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.

(2) 수급인은 자재 보관 과정에서 변질, 손상, 오염, 뒤틀림,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

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.

- (3) 건설공사용 자재중에 LHCS 10 40 00(1.5.1)를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.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.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품질시험.검사가 완료된 기 반입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- (4) 공사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야외 보관 자재에 대하여는 바닥에 지지판 등을 설치하여 자재가 지면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- (5) 수급인은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- (6) 수급인은 자재를 저장시에는 검사를 위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배치해야 하며, 자재가 손상되지 않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.
- (7)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 합격자재는 공사감독자(건설사업관리자)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며, 불합격된 자재는 LHCS 10 40 00(1.5.6)를 따라 지체없이 현장외로 반출하도록 한다.
- (8) 수급인은 반입된 자재 및 시공 중의 기성물에 대한 도난 또는 손상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장 경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.

### 1.8 레미콘.아스콘 불량자재 처리

#### 1.8.1 레미콘.아스콘 불량자재 일반사항

- (1) 레미콘.아스콘 불량자재 처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해당요건에 따른다.
- (2) 수급인은 반품한 자재가 다른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불량자재 폐기 약속서를 자재생산업자에게 징구하여 준공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.

### 2. 자재

내용 없음

### 3. 시공

내용 없음